



문 서 번 호 : TRUSTON마케팅2026-196

2026년 3월 25일

수 신 : 하나은행

발 신 : 트러스톤자산운용(주)

제 목 :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3.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대상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내용 :

대상 집합투자기구	변경 내용
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	① 투자위험등급 변경(4등급→3등급) ② 제1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 투자신탁[주식]	① 책임운용역 변경 (이태하→심규민)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트러스톤밸류웨이40증권자 투자신탁[채권혼합]	① 책임운용역 변경 (이태하→심규민)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퇴직 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	① 제1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트러스톤재형다이나믹코리아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	① 제1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	①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② 오기정정

나. 효력발생일: 2026년 3월 4일

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(1) 투자설명서 1부
(2) 간이투자설명서 1부
(3)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1부
(4) 운용전문인력 변경 1부. 끝.

트 러 스 톤 자 산 운 용 주 식 회 사
대 표 이 사 황 성 택 · 김 영 호

